



COVID-19 통제를 위한 보건 담당관의 명령 제 20-06e 호

보건 비상 검역 명령

명령 발령 일자: 2020년 4월 3일, 개정 일자: 2020년 5월 4일, 2020년 6월 8일,
2020년 7월 28일, 2020년 10월 30일

본 명령은 보건 책임자의 서면 해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지시 개요

캘리포니아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비상사태하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은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COVID-19는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본 지시는 2019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에 노출로 발현되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 또는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대중의 일원을 보호하는데 현재 잘 알려져 있고, 가용한 과학적 증거 및 최상의 실행에 기반을 두고 발령됩니다. 알라메다 카운티(이하 '카운티') 인구 중 상당수의 나이, 상태, 건강상의 특성으로 인해 사망을 포함한 COVID-19의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악화하는 것은, COVID-19를 야기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 중, 전염성을 지닌 상태에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감염자도 있기에, 자신이 바이러스를 지닌 감염자라는 사실을 인식 못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의 정도(없음, 경미, 심각)와 관계없이 COVID-19 감염자 누구나 사회의 다른 취약 인구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구체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국(이하 '보건국')은 카운티 내 COVID-19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취약 인구를 보호하며 보건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노출된 사람에 대한 검역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역은 COVID-19에 노출된 사람이 질병을 확산시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본 지시에 정의된 공안부문 종사자는 무증상이며, 완화될 수 없는 직원 부족으로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구성될 경우, 검역 기간 도중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고용주 및 직원은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에서 발행한 추가적 [예비책](#)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제 101040 조, 제 101085 조, 제 120175 조에 따라 앨러미다 카운티 보건 책임자는 다음을 지시합니다.

COVID-19 확진자의 가족, 가까운 파트너, 간병인 및 COVID-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이 있는 사람은 자가 검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자는 본 지시 및 본 지시에 언급된 보건 지침 문건의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지시의 위반은 벌금 최대 1만 달러 및/또는 1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보건안전법 §§ 120295 이하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 69 & 148)



COVID-19 확진자의 가족, 가까운 파트너, 간병인 및 COVID-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역 요건

COVID-19 감염자(‘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 확진자의 거주지에 살거나 함께 머무른 사람 또는
- 확진자의 성교 상대 또는
- 마스크, 가운,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를 돌보거나 돌본 사람 또는
- 확진자와 15 분 이상 6 피트 이내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안 이러한 접촉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는 증상이 시작되기 48 시간 전부터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염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판명된 사람은 누구나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마지막 날로부터 14 일 동안 자택 또는 다른 거주지에서 격리합니다. 밀접 접촉자는 COVID-19의 발병 및 확산 위험이 크기에, 14 일의 잠복기 전 기간 동안 자가 검역(격리)해야 합니다. **14 일 기간 이내에 COVID-19 검사에 음성 결과를 받는다 해도, 검사 후 양성일 수 있기 때문에, 검역 기간을 감소하지 않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반드시 마지막 접촉 시점부터 14 일 전체의 기간동안 검역해야 합니다.**
2. 검역 중인 사람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역 장소를 떠나거나 다른 공공 장소 또는 사유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3. ‘자가 검역 지침(Home Quarantine Instructions, <http://www.acphd.org/2019-ncov/resources/quarantine-and-isolation>)’을 자세히 읽고 명시된 모든 요건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4. 검역 중인 사람에게 발열, 기침 또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경우(증상이 매우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하여 자가 격리 지침(Home Isolation Instructions) <http://www.acphd.org/2019-ncov/resources/quarantine-and-isolation> 을 준수해야 합니다.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감염된 경우 취약 인구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래 정의된公安부문에 종사하는 필수 근무자만이, 그리고 오직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는 경우에서만, 검역 기간 도중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1. 노출 여부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근무자
2. 본 지시의 목적으로 다음을 의미하는公安부문에 종사하는 근무자:



- a. 연방, 주 정부 및 지역 법률집행기관
- b. 911 콜 센터
- c.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위험물 처리반

“공안부문”에는 의료인, 응급치료 요원 및 소방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검역중인 근무자의 복귀 없이는 완화될 수 없는 치명적인 직원 부족이 있을 경우
그리고
- 4. 이러한 치명적인 직원 부족으로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구성될 경우

검역 기간 도중 직장 복귀가 허용되는 공안부문 종사자는 검역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자택을 떠나기 전, 체온 및 증상 진단을 포함한 자가 진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안부문의 고용주는 검역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달리 검역되어야 하는 직원이 직장에 출입하기 전, 체온 및 증상 진단을 포함한 진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둘 다 하루 종일 직원의 상태를 관찰하여,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무 도중 증상을 발달할 경우, 즉시 자택으로 돌아가, 보건 책임자의 격리 명령 및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보건 책임자는 본 지시의 대상자가 지시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류 또는 의료 시설이나 기타 장소에 머물도록 요구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지시의 위반은 징역,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지시를 발령합니다.

Dr. Nicholas J. Moss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 책임자 대행

2020년 10월 30일
일자